

테마파크업 []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
[] 허가사항 변경신고서

※[]에는 √ 표시를 하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3일
신청인	성 명(대표자)	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		
	주 소	전화번호		
영업소	명칭(상호)	대표자		
	소재지	전화번호		
	영업의 종류	허가번호		
변경내용	변경전			
	변경후			
	변경일자	년	월	일

허가증 분실사유:

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·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대장 및 공부확인	일 자	결 과	서 명
건축물대장등본/토지이용계획확인원			

제출 서류	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(다만, 「관광진흥법」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테마파크시설을 갖추기 전에 그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변경계획서 1부와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)	1. 허가증 1부 2.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.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신설·이전하는 경우에는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4.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
	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	1.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(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포함합니다) 1부 2.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3.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.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에 관한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5.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	「관광진흥법」 제7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	법인 등기사항 증명서(법인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.)	

유의사항

- 변경허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가. 영업소의 소재지(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제외)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
 - 나.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·이전·폐기
-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가. 대표자 또는 상호 또는 안전관리자의 변경
 - 나.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의 신설·폐기
 - 다.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
 - 라.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테마파크시설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
- 신청(신고)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.
 - 가.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(영업정지·허가취소 등)
 - 나. 「관광진흥법」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적고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.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➔	접 수	➔	검 토	➔	결 정	➔	허가증 발급
신청·신고인		처 리 기 관 (특별자치시장·특별 자치도지사· 시장·군수·구청장)		처 리 기 관 (특별자치시장·특 별자치도지사· 시장·군수·구청장)		처 리 기 관 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 치도지사· 시장·군수·구청장)		